

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109호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2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
대상 품목 지정 내역

대 분 류		소 분 류		세 부 분 류		특이사항	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
번호	대분류	번호	제품명	세부품명번호	세부품명		
24	물품취급,조정,저장기계,액세서리및소모품	241016	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	2410164201	기중기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25	상용,군용,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	251115	상선	2511150201	어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		2511150601	예인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		2511150701	바지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		2511150801	자동차도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		2511150802	여객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		2511151801	병원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		2511152401	벌크화물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		2511152701	소형보트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		2511159701	기동정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251116	안전및구조용선박	2511160201	소방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		2511160301	구조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		251117	군용선박	2511171801	순시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미만에 한함	

대분류		소분류		세부분류		특이사항	공사용 자재 작업구 대용품목
번호	대분류	번호	제품명	세부분류명번호	세부분류명		
		251120	특수선박	2511172201	경비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 미만에 한함	
				2511172601	오염관리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 미만에 한함	
				2511200401	세관감시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 미만에 한함	
				2511200701	어업실습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 미만에 한함	
				2511200801	어업조사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 미만에 한함	
				2511200901	어업지도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 미만에 한함	
				2511201201	청소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 미만에 한함	
				2511201401	해양조사선	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 미만에 한함	
30	건자재	302220	운송건물	3022201701	잔교	1. 총톤수(Gross-tonnage) 1,000톤 미만에 한함 2. 강제, 목제, 합성수지제 (PE잔교 제외), 경금속제에 한함	

부 칙 <제2024-109호, 2024. 12. 27.>

1. 동 지정내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동 지정내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3. 종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8호(2024. 2. 16.)를 폐지한다.
4.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.
5. 2025년 1월 1일 현재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'판로지원법')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업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 지정내역에서 제외한다. 단, 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(이하 '운영요령')」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에 따라 추천요건의 예외가 적용되는 품목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업이 5개 미만인 경우에 제외한다.
6. 제품의 분류 및 해석
 - ① 제품의 분류 및 해석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(제품의 명칭 및 분류)에 따르며, 판로지원법 제7조(경쟁제품 계약방법) 적용 여부는 판로지원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'공공구매지원관리자'의 검토에 따른다.
 - ②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동 지정내역의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한다.
7.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품분류번호(8단위) 및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(조달청 훈령 제2060호)」 제12조에 따른 세부품명(10단위)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(www.g2b.go.kr) 내 목록정보시스템에 따른다.